

# 2019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(후보자) 양성교육 안내

## 1. 성년후견제도와 (공공)후견인

- 성년후견제도는 ‘질병이나 장애,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, 부족하여 사무 처리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’에 대해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하여 돕는 제도입니다.
- 후견인은 후견을 받는 사람(피후견인) 스스로가 자신의 남아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, 기타 일상생활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.

## 2.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지원사업

-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-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 장애인)에게 후견심판청구비와 공공후견인 활동비를 지원합니다.

## 3. 공공후견인

- 공공후견인은 후견인 중 공익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추천하여 후견인으로 선임된 자를 말합니다.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정의 활동비 (2019년 기준 월 150,000원/피후견인 1인)가 지급됩니다.
- 후견인의 업무 및 권한 : 재산관리 및 법정대리, 신상보호와 신상결정 지원
- 발달장애인은 주위로부터 학대·방임이나 경제적·정서적·신체적·성적으로 착취나 희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이 이러한 위험에 처하거나 희생되지 않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.

#### 4.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계획(안)

- 교 육 명 : 2019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양성교육
- 일 시 : 2019년 10월 29일, 30일, 31일, 11.1일 (4일간) 오전 09:00~19:00  
단, 1일(금요일)은 시험으로 17:00에 종료 예정
- 장 소 : 고양시(세부장소 미정)
- 정 원 : 35명(선착순 접수하되,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외)
- 수 강 료 : 50,000원(중식 미제공)
- 참가대상 : 공공후견인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자(만18세 이상)  
민법 제937조(후견인의 결격사유) 미해당자(미성년자, 행방 불분명한 사람 등)
- 교육내용 : 8과목 총 31시간(자조모임 1시간 포함)

일자	교육시간	과목	강사	시간
1일차 10/29	09:00-12:00	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이해		3
	13:00-16:00	발달장애인의 이해		3
	16:00-19:00	후견심판절차의 이해		3
2일차 10/30	09:00-12:00	사회보장제도의 이해		3
	13:00-16:00	공공후견제도에 있어서 후견인의 직무와 역할		3
	16:00-19:00	재정관리의 이해		3
3일차 10/31	09:00-12:00	장애인의 인권과 후견인의 윤리		3
	13:00-16:00	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지원		3
4일차 11/1	09:00-14:00	실습(발달장애인 이해를 위한 만남)		4
	14:00-16:00	평가 및 수료식	각 과목별 평가(시험)	2
	16:00-17:00	자조모임		1
총 시간				31

## ○ 실습안내

교육 내용 중 '현장실습'은 교육생이 개별적으로 발달장애인 이용 기관을 방문하여 실습을 진행한 후 실습확인서 및 실습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<현장실습기준>

실습기관 :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된 법인, 시설, 기관 및 단체로 하되,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기관으로 한다. (단, 교육생이 재직중인 기관 또는 재직중인 기관의 산하시설, 발달장애인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실습은 불가함)

실습내용 : 발달장애인과 직접 활동으로 한다.

실습지도자 :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.

실습시간 : 실습 시간은 4시간으로 함.(단 발달장애인 기관에 근무자 및 당사자 부모는 2시간으로 함)

○ 교육 수강 전 준비사항 : 신분증 지참(매 시간 출석 확인), 100% 출석 및 평가통과시  
수료증 발급

## ○ 교육 신청방법

e후견종합정보(<http://eguard.or.kr/>)회원가입 후,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신청(팩스, 메일 신청 불가)

## ○ 수강료 납부

• 수강료는 신청서 작성 후, 계좌납부(참가자명으로 3일 이내) 농협 301-0090-6065-31 자립지원센터

## ○ 교육문의

경기도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T. 031-969-4182/ F. 031-969-4183/ Email 6kawt@daum.net

경기도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운영하고 있으며,  
2013년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『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교육 지원기관』으로 지정되어  
공공후견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